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6. 고병준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24. 2. 20.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2.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구민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5조~제6조)
-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구민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본 제정안은 도시는 복잡다기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서 주민들이 각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평하게 영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도시공간은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조성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무장애 도시란 일차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용자가 도시환경을 향유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모든 장애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의미하며 교통·환경 같은 유형적인 부분에서 정보·관광·교육·제도·인식 등에 무형적인 부분까지 형태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세임. 최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설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여(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흥잇인간 유니버설 도시 만들기, 마포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자문 및 기술지원 등) 우리구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가

입 및 인증을 도시조성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 및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법규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종합검토의견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도시가 요구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각도 차별을 도와주는 관점이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서 당당히 누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2022. 4. 22.	어르신·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9. 21.	어르신장애인복지과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19. 4. 11.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무장애 도시’, ‘무장애 관광 환경’,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등으로 검색 시 전국에 관련 조례가 총 49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